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87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임호선 · 안도걸 · 박정현
이상식 · 이정문 · 임미애
서영석 · 정춘생 · 박해철
김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에 따라 운전자의 지속적인 조작 없이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준수의무와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운행책임자, 안전관리자, 자율주행사업자 및 제조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운행 제한, 사고 발생 시 신고·구호 및 데이터 조사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운행책임자·안전관리자·사업자 및 제조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안전관리체계, 교통정보 제공 및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로 규정하되,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전조작의 전부가 이루어지는 완전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자를 운전자에서 제외함(안 제2조).
- 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을 관리·감독하고 비상대응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구호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그 준수사항과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화물 운송 또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사업자에게 차량의 정기점검, 교통법규 준수 확보, 운행데이터의 저장·관리, 정보보안 및 운행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
- 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점검이나 직접 운전조작 및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운행하려는 경우 교통량,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여부 및 운행안전 관리체계 등 도로교통 여건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운행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안전관리자 또는 자율주행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특례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9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운행가능영역”이란 자율주행시스템이 도로, 기상, 시간 및 지형 등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을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란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거나 외부의 지정된 위치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사람(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하거나 도로의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완

전자율주행의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완전자율주행”이란 지정된 조건 또는 모든 영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전조작(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작동한계상황에서 필요한 조작을 포함한다)의 전부가 이루어지는 운행을 말한다.

6. “안전관리자”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상황을 관리·감독하고, 비상대응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자율주행사업자”란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책임자”란 운전석이 있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완전자율주행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자 및 운행하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 ①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한 사항
5.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관한 기술(이하 “자율주행 교통

안전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4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운전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책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책임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의 “운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에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책임자는 완전자율주행 중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운전장치를 조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책임자에 준용한다.

제8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안전관리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행 전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및 운행환경 등에 대한 점검
2. 운행가능영역 및 제한사항의 숙지
3. 운행상황의 상시 확인
4. 비상대응절차의 수행
5.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의하여 사상자 또는 물건의 손괴(이하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가 경찰관서에 대한 즉시 신고 및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交通安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관리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제45조의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 개입이나 외부의 지정된 위치에서의 조작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제9조(자율주행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자율주행사업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交通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점검
2.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교통법규 준수 보장
3.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지원
4.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데이터 저장·관리 및 관할 관청의 요구 시 제출
5.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방법으로 시설 및 장비를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로부터 자

을주행시스템,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율주행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운행관리체계(운행기록 분석, 시스템 진단, 이상 대응 절차 포함)를 구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자율주행사업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계획의 수립, 운행구역의 설정,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 감시 및 교통법규 준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동안 자율주행사업자에게 준용한다.

⑤ 자율주행사업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중대한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의무와 제2항 운행관리체계의 세부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자(자율주행시스템만을 공급하는 자도 포함한다)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설계·제작·운행 및 사후관리의 전 과정에서 안전성과 적법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성과 적법성 확보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조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에 관한 데이터, 사이버보안 및 통신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통신체계가 외부 침입이나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외부의 해킹·비인가 접근 또는 결함이 탐지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및 경찰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조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평가 결과, 보안관리체계, 소프트웨어 변경 내역 및 결함 대응 현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교통안전 확보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조자가 제출한 기술검증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의 제한 등) ①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 기간 및 교통상황 등을 정하여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율주행시스템

에 의한 운행을 우선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기간 및 교통상황 등을 정하여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교통사고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즉시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에 앞서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운행 금지 또는 제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점검요구 등) ① 경찰공무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나 보유자(소유자와 자율주행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운행을 정지시킨 후 점검을 받도록 명하거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게 직접 운전조작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험발생의 우려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운행을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 및 점검 명령과 직접 운전조작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지정되려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이하 “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승인 전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예정구역의 도로교통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경찰청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60일”로 본다.

④ 경찰청장은 운행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도로교통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교통량, 교통 정체 수준, 보행환경 및 제한속도 등 교통환경
2. 보호구역 지정 여부,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교통안전 관련 사항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관리 체계
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운행예정지역의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여건에 비추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행허가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운행허가를 갱신하여 받아야 한다.

⑧ 그 밖에 운행허가의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 운행허가의 갱신, 제2항에 따른 합의의 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변경허가 등) ① 운행허가(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적합성 승인”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으로, “운행허가”는 “변경허가”로 본다.

③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운행허가의 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행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4. 이 조에 따른 운행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5. 운행예정지역의 교통안전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4조제6항(제1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8.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9.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17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행허가의 취소와 운행 정지 또는 제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운행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 ①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

2. 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의 신고(자율주행자동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태 확인 및 비상대응 조치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로 지정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1.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

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

3.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을 것

⑤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지정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⑥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행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제14조제4항제3호의 관리 체계의 개선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안전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필요한 조치

⑦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조치,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직무범위·교육 등, 제5항에 따른 지정 내역의 공개·보관·관리 및 제6항에 따른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경찰청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제14조제4항(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율주행 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정보(「도로교통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교통정보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신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자율주행시스템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교통정보의 종류와 수집·분석·제공에 관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와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수집한 자율주행 교통정보 또는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

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조사) ① 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라 설치된 사고기록장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에 따라 설치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이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라 한다)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4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조사 결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 개발·발전의 촉진 등) ①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국내외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확보
 3.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확산
 4.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5.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②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4. 개발된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평가
5.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의 협력·이전 등 실용화
6. 그 밖에 자율주행 교통안전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제협력) ① 국가는 완전자율주행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관한 기술 및 인력

의 국제교류와 행사의 공동개최,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정책위원회) ①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1명은 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경찰청장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27조(벌칙) ① 제14조의 운행허가(운행허가의 갱신을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를주행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중대한 이상을 발견하고도 국토교통부 또는 경찰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킹·비인가 접근 또는 결함 발생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2.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3.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을 위반하여 사용한 운전자
4.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안전관리자

④ 안전관리자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율주행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안전관리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안전관리자가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율주행자동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의 죄를 범한 안전관리자 또는 자율주행사업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는 등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27조제5항의 죄를 범한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운행데이터를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관리체계를 구축·점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7조제4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자

3. 제8조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관리자

4. 제9조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사업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정 내역을 공개하고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1조(범칙금) ① 이 조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자율주행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 등에 따른 범칙금(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

한다)의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과 범칙금의 납부 및 그 방법,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직권 남용의 금지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제164조의2, 제165조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 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과태료 및 범칙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제3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이 법 제14조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운행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의2 및 같은 조 제18호의3,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156

조 제6호의2, 제160조제2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26호 중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98조의2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0조 중 “제56조의3 제1항 또는 제73조”를 “제73조”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2호 중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제3항 및 제56조의3제1항”을 “제53조제2항 및 제53조의3제1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호의5·제10호”를 “제4호의5”로 한다.